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 정혜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402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총괄 검토	4
2. 조문별 검토	10
가. 재생에너지 발전의 공영화	10
나.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명시	19
다. 기본계획 수립시 공공재생에너지 목표 비율 포함 등	24
라. 자연력 활용 부담금 신설	32
마. 정의로운 전환 이행 의무 신설	36
※ 참고자료	40

I. 제안경위

2026년 1월 28일 정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1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산업 활성화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재생에너지 발전의 공공적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지역 불균형, 사적 독점, 개발이익 편중, 주민 수용성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 발전의 공영화 원칙을 확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또한 중장기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법률에 명시하고, 주민 참여와 협의 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발전이 환경과 지역사회와의 조화를 이루며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법 목적에 ‘재생에너지 발전의 공영화’를 추가하고, 자연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의 생산·이용 원칙으로 공영화, 자연환경 보전, 농림어업과의 조화, 주민 협의절차 마련을 명시하여 재생에너지 공영화 원칙을 신설함 (안 제1조 개정, 안 제3조 신설).
- 나. 총 전력생산량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30년까지 30%, 2040년까지 60% 이상, 2050년까지 100% 달성하도록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여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4조 신설).
- 다. 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총 발전량 중 국·공영시설 발전 비율 목표’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개정).
- 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지역 연차별 실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 마. 재생에너지 발전 공영주체 규정 신설하여 국가·지자체가 설립하는 지방공단·출자출연기관 및 복수 기초지자체의 공동 법인을 공영주체로 규정함 (안 제11조의2 신설).
- 바. 발전시설 설치·운영, 환경과의 조화, 재생에너지 자립 추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주민·시민단체와 협의를 의무화함(안 제7조 개정).
- 사. 자연력 활용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10% 범위 내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지역기후대응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역 자립, 에너지 복지, 정의로운 전환 사업 등에 활용함(안 제12조의2 신설).

아. 공영주체가 아닌 민간사업자의 경우 특허기간 만료, 조건 위반, 사
정변경 시 사업을 공영주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소명기회와
보상규정을 마련함 (안 제12조의3 신설).

자. 국가 및 지자체에 석탄·원전 노동자의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전환 의무를 부과하고,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취업 교육,
생활보조금, 이주 비용 지원 등을 이행하도록 규정함(제12조의4 신
설).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개정안은 자연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공영화하여 재생에너지의 공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과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의 내용은 ① 재생에너지 발전의 공영화, ②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명시, ③ 기본계획 수립시 공공재생에너지 목표 비율 포함 및 주민과의 사전협의 의무 신설, ④ 자연력 활용 부담금 신설, ⑤ 정의로운 전환 이행 의무 신설로 구분됨.

[개정안의 구분]

구분	조항	내용
재생에너지 발전의 공영화	제1조, 제3조, 제10조의3, 제11조의2, 제12조의3	· 법률의 목적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공영화 추가 · 자연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상업 생산의 공영화 원칙 명시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사업비의 사용 항목에 재생에너지 공영화 추가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공영화 및 보상 근거 신설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명시	제4조	· 총 에너지 발전량 대비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비율 명시
기본계획 수립시 공공재생에너지 목표 비율 포함 및 주민과의 사전협의 의무 신설	제5조, 제6조의2, 제7조	· 기본계획 수립시 재생에너지 총발전량 중 국·공영시설의 비율 목표 포함 의무 신설 · 지역 기본계획 수립시 재생에너지 공영화 목표 및 지원 방안 포함 의무 신설
자연력 활용 부담금 신설	제12조의2	· 자연력을 활용한 발전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조항 신설 · 부담금의 부과 범위, 사용 용도 명시
정의로운 전환 이행 의무 신설	제12조의4	· 석탄·원전 노동자의 공공재생에너지사업 우선 고용 및 근로조건 유지, 재취업·생활지원 근거 신설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중장기적 목표로 제시한 파리기후변화협정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2023년 12월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23개국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3배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이에 우리 정부는 2025년 2월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균형있는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¹⁾ 2038년까지 138,068MW의 발전설비 용량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민간에서도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국제적 캠페인인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²⁾에 444개(2025년 12월 기준)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상황임.

1) 태양광:풍력 설비용량 비교: ('21년 실적) 92:8 → ('36년 전망) 66:34

2)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자발적인 캠페인으로 2014년 CDP(영국 소재 민간단체) 주관으로 시작됨.

[2036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단위: MW, 정격용량 기준)

연도	사 업 용										자가 용	합계
	재 생 에 너 지						신 에 너 지			합계		
	태양광	풍 력	수 력	해 양	바이 오	소계	연 료 전 지	IGCC	소계			
2024	28,150 (4,025)	2,293 (55)	1,909 (405)	256 (0)	1,852 (1,083)	34,458 (5,568)	1,148 (840)	346 (346)	1,494 (1,186)	35,952 (6,754)	4,369	40,321
2026	36,090 (5,161)	3,958 (95)	1,909 (405)	256 (0)	1,852 (1,083)	44,064 (6,743)	1,721 (1,260)	346 (346)	2,067 (1,606)	46,131 (8,349)	5,344	51,475
2032	61,739 (8,829)	24,868 (597)	1,909 (405)	256 (0)	1,852 (1,083)	90,623 (10,913)	2,821 (2,065)	346 (346)	3,167 (2,411)	93,790 (13,324)	8,556	102,346
2038	77,203 (11,040)	40,671 (976)	1,909 (405)	256 (0)	1,852 (1,083)	121,890 (13,503)	3,621 (2,650)	346 (346)	3,967 (2,997)	125,857 (16,500)	12,211	<u>138,068</u>

* ()는 실효용량 기준

자료: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5.2.)

실제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4년 기준 10.69%로, 전년 대비 1.02%p 증가하였고, 68,116GWh의 재생에너지를 생산 중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단위 : GWh, %)

구분		2022		2023			2024		
		발전량	비 중	발전량	비 중	증감률	발전량	비 중	증감률
발전비중*		9.22%		9.67%			10.69%		
신·재생에너지		57,780	100.0	60,400	100.0	4.5	68,116	100.0	12.8
재생E	재 생E	50,406	87.2	53,146	88.0	5.4	58,461	85.8	10.0
	신E	7,374	12.8	7,254	12.0	△ 1.6	9,655	14.2	33.1
	태 양광	30,726	53.2	33,236	55.0	8.2	37,450	55.0	12.7
	풍 력	3,369	5.8	3,392	5.6	0.7	3,737	5.5	10.2
	수 력	3,545	6.1	3,718	6.2	4.9	4,313	6.3	16.0
	해 양	424	0.7	438	0.7	3.2	418	0.6	△ 4.4
	바이 오	11,928	20.6	11,918	19.7	△ 0.1	12,118	17.8	1.7
	폐 기 물	414	0.7	444	0.7	7.2	425	0.6	△ 4.3
신E	연료전지	5,410	9.4	6,257	10.4	15.7	7,583	11.1	21.1
	IGCC	1,965	3.4	997	1.6	49.3	2,072	3.0	107.9

* 발전 비중 : 국가 총발전량 대비 비중

자료: 2024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한국에너지공단)

그러나 생산된 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민간 비중은 80% 이상에 해당하고, 국내 해상풍력 사업을 위한 발전사업허가권 90개 중 44개(약 50%)는 해외 업체가 차지함에 따라, 미래세대의 전기에너지 민영화의 우려가 제기됨.

[공공 및 민간 발전량]

(단위 : GWh)

구분	총발전량	재생E	태양광	풍력	바이오	수력	해양
남동발전	39,664	1,857	122	56	1,643	36	-
중부발전	46,266	678	24	18	613	24	-
서부발전	38,041	157	108	38	-	11	-
남부발전	37,720	961	46	33	877	5	-
동서발전	35,264	310	122	3	185	-	-
한수원	195,155	1,550	103	-	-	1,448	-
지역난방공사	11,347	23	1	-	13	-	-
수자원공사	2,884	2,884	29	5	-	2,530	320
한국전력	327	1	1	-	-	-	-
공공 전체	406,668	8,422	556	152	3,331	4,053	320
	68.3%	16.5%	1.7%	4.5%	32.6%	94.2%	100.0%
공공 외	188,933	42,520	32,168	3,226	6,888	247	-
	31.72%	83.47%	98.30%	95.49%	67.41%	5.75%	-
전체	595,601	50,942	32,725	3,378	10,219	4,300	32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에 공공재생에너지연대³⁾를 주축으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2025 공동행동’이 결성되어 입법 운동이 결의되었고, 2025년 7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법제화’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⁴⁾이 제안됨.

3) 기후정의동맹,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발전노조, 진보당, 정의당

4) [2200206]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태성외 50,226인), 청원 원문은 ※참고자료1 참조

청원은 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및 고용 불안 해소와 재생에너지 이익의 공공 환수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담고 있고, 동 개정안은 해당 청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임.

즉,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시장의 과도한 민영화와 그에 따른 전력산업의 안보적 기능 훼손 우려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공적 투자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공급 체계를 확립하여 탄소중립 이행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음.

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성격과 국가 전력망의 안보적 기능을 고려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공공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공기관 및 지역 협동조합의 참여를 독려하여 발전 수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입법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다만,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공공성 확립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의 공영화 원칙을 법률로 강제하는 방식은 공공 부문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민간의 기술 혁신 동력을 저해하는 등 국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특히 관계 부처 및 단체에서도 본 개정안에 대하여 국제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과 배치되어 해외 자본 이탈 및 재생에너지 산업 축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신중 검토 의견을 제출하였음.

따라서, 본 개정안은 에너지 시장 구조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동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5359호)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2. 조문별 검토

가. 재생에너지 발전의 공영화

개정안은 자연력을 활용하여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국가적 공공재로 명시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의 공영화 원칙을 명시하며(제1조 및 제3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하여 조성된 사업비를 재생에너지 공영화에 사용하도록 하고(안 제10조제3호),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공공운영의 근거(안 제11조의2) 및 민간기업의 수용·보상 근거(안 제12조의3)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u>산업의</u>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발전의 공영화와 재생에너지 산업의</u> ----- ----- ----- ----- ----- ----- ----- ----- -----.
<신설>	제3조(자연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
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
의 사업에 사용한다.

1. 2. (생 략)

생산과 이용의 원칙) ① 태양에너
지·풍력·수력·해양에너지·지
열에너지 등 국유인 자연력을 활
용한 재생에너지의 상업적 생산
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영
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경제적
·기술적 사유로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허에 의한다.

② 자연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은 자연력의 재생이 가능하
고 자연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야
기하지 않으며 타인의 일상 생활
유지와 이를 위한 자연력 활용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이루어져
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
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이
농림어업 등 지역의 생산활동과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역 사회 공
동체의 의견에 부합하며, 주민이
이로 인한 편익을 고루 누리도록
하고, 이를 위한 주민 의사 협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

-----.

1. 2. (현행과 같음)

<신 설>

4. ~ 16. (생 략)

<신 설>

3. 재생에너지 공영화

4. ~ 16.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의 공공 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률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기준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를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군

2. 도 및 시·군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도 및 시·군이 단독 또는 공

<신 설>

동으로 설립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
군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생에
너지 사업을 위하여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을 새롭게 설립
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
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공영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제5조제2항제3호의2의 재생에
너지 공영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허기간이 만료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수용하여
제11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관으
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특
허 조건을 위반한 경우 또는 재
생에너지 발전 여건이 현저히 변
화되어 특허의 변경이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이 경우에는 특허 유
지의 필요성이 있는지 등에 관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명절
차를 거쳐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

제24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생략) <u><신설></u> 3. (생략)	<u>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공영화할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u> 제24조(청문) ----- -----. 1. (현행과 같음) 2. <u>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특허의 취소 또는 변경</u> 3.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공공과 민간의 구분 없이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는 데 목적⁵⁾을 두고 있으며, 민간 사업자가 자유롭게 시장에 참여하여 자본 투자를 할 수 있음.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생산 원료가 자연력이라는 공공재이므로, 자연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 또한 공공적 성격을 가진다는 전제 하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원칙적으로 공영화하려는 취지임.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적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기간 만료, 조건위반 적발 등 사유가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 민간 발전을 수용하여 운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를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있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재생에너지 상업적 생산의 원칙적 공영화 규정은 헌법상 보장된 기업의 경제적 자유 및 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자연력 사용은 배타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영화 원칙은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공영을 원칙으로 하기보다는 공공성과 시장의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

둘째, 재생에너지 상업적 생산의 공영화 원칙, 예외적 특허 허용 규정은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허가 규정과 충돌할 우려가 있음.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 규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이하 “전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및 특정한 공급구역별로 구분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다.

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3.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4.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을 갖추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 4의2.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현행 「전기사업법」 제7조는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재무능력·기술능력, 사업 수행 가능성 등 일정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발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기사업자의 주체를 공공에 한정하지 않고 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자의 시장 참여자를 전제로 하는 허가제를 취하고 있음.

따라서 재생에너지의 상업적 생산을 원칙적으로 공영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특허를 통해 민간 참여를 허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현행 「전기사업법」 상 일반적 허가제 구조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며, 동일한 전력 생산 활동에 대하여 서로 다른 법률이 상이한 사업 주체 원칙을 설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법률 체계 정합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셋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경우, 이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기존 발전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 등 다양한 공공기관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5개 발전사(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및 한국동서발전) 등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서울에너지공사 등 지방공기업을 통하여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신재생e 발전사업 수행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 현황(예시)]

기업명	주요 사업	비고
한국전력공사	송·배전, 신재생 발전 등	-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 신재생 발전 등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 (발전공기업)
한국남동발전	화력, 신재생 발전 등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열병합, 신재생 발전 등	-
한국수자원공사	신재생 발전 등	-
서울에너지공사	신재생 발전 등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신재생 발전 등	
전남, 전북, 경북개발공사	신재생 발전 등	

이들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법,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률을 근거로 설립·운영되고 있는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공공법인 설립 근거를 추가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기존 기관과의 기능 중복 여부, 조직 신설에 따른 인력·예산 증가 등과 관련하여서는 유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므로, 동 조항의 신설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마지막으로, 민간 발전사업자에 대한 국가의 사업권 수용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규정은 민간 사업자의 헌법상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음.

특히, “발전 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특허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추상적 요건에 따라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권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12조의3제2항 규정은 사업 리스크를 증가시켜 민간 투자 의욕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영화 원칙이 민간 투자를 위축시켜 국가 보급 목표 달성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제출하였고, 태양광 및 풍력 업체 등 산업계에서도 사유재산권 침해 및 시장 위축을 이유로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하였음.

나.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명시

개정안은 총 에너지 발전량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30퍼센트, 2040년까지 60퍼센트 이상, 2050년까지 100퍼센트를 확보하는 목표를 명시하고, 정부에 중장기확대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설정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신설).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시책과 장려 등) <신설>	제4조(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등) ①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0년까지 총 에너지 발전량 대비 30퍼센트, 2040년까지 60퍼센트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2050년까지 100퍼센트를 확보하는 것을 중장기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이하 “중장기확대목표”라 한다)로 한다.
<신설>	② 정부는 중장기확대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연도별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이하 “연도별확대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①·② (생략)	③·④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4년 기준 10.69%로, 전년 대비 1.02%p 증가하였고, 68,116GWh의 재생에너지를 생산 중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단위 : GWh, %)

구분		2022		2023			2024		
		발전량	비 중	발전량	비 중	증감률	발전량	비 중	증감률
발전비중*		9.22%		9.67%			10.69%		
신·재생에너지		57,780	100.0	60,400	100.0	4.5	68,116	100.0	12.8
	재생E	50,406	87.2	53,146	88.0	5.4	58,461	85.8	10.0
	신E	7,374	12.8	7,254	12.0	△1.6	9,655	14.2	33.1
재생E	태양광	30,726	53.2	33,236	55.0	8.2	37,450	55.0	12.7
	풍력	3,369	5.8	3,392	5.6	0.7	3,737	5.5	10.2
	수력	3,545	6.1	3,718	6.2	4.9	4,313	6.3	16.0
	해양	424	0.7	438	0.7	3.2	418	0.6	△4.4
	바이오	11,928	20.6	11,918	19.7	△0.1	12,118	17.8	1.7
	폐기물	414	0.7	444	0.7	7.2	425	0.6	△4.3
	연료전지	5,410	9.4	6,257	10.4	15.7	7,583	11.1	21.1
신E	IGCC	1,965	3.4	997	1.6	49.3	2,072	3.0	107.9

* 발전 비중 : 국가 총발전량 대비 비중

자료: 2024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한국에너지공단)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기준 9% 수준인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18.8%, 2038년 29.2%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음.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전망('24~'38)]

(단위 : GWh)

연도	사 업 용										자가용	합계 (비중, %)
	재 생 에 너 지						신 에 너 지			합계 (비중, %)		
	태양광	풍력	수력	해 양	바이오	소계 (비중, %)	연 료 전 지	IGCC	소계 (비중, %)			
2024	34,160	4,330	3,633	446	11,146	53,716 (9.0)	7,277	2,182	9,459 (1.6)	63,174 (10.5)	5,956	69,130 (10.8)
2025	39,140	5,255	3,712	445	11,164	59,716 (9.8)	8,832	2,176	11,008 (1.8)	70,723 (11.7)	6,549	77,273 (11.9)
2026	44,154	6,889	3,712	445	10,870	66,070 (10.8)	10,631	2,176	12,806 (2.1)	78,877 (12.8)	7,212	86,089 (13.1)
2027	49,055	10,369	3,712	445	10,863	74,445 (12.0)	12,179	2,176	14,354 (2.3)	88,799 (14.3)	7,896	96,696 (14.5)
2028	54,731	16,223	3,722	446	10,878	86,001 (13.7)	13,656	2,182	15,838 (2.5)	101,839 (16.2)	8,626	110,465 (16.3)
2029	60,195	26,898	3,712	445	10,846	102,096 (16.1)	15,059	2,176	17,235 (2.7)	119,331 (18.8)	9,328	128,659 (18.9)
2030	67,127	38,822	3,712	445	10,814	120,920 (18.8)	16,500	2,176	18,675 (2.9)	139,595 (21.7)	10,071	149,666 (21.7)
2031	73,113	48,514	3,712	445	10,815	136,599 (20.9)	17,760	2,176	19,935 (3.0)	156,535 (23.9)	10,824	167,359 (23.8)
2032	77,188	56,855	3,722	446	10,845	149,056 (22.4)	18,892	2,182	21,073 (3.2)	170,130 (25.6)	11,617	181,746 (25.4)
2033	80,846	63,079	3,712	445	10,803	158,886 (23.6)	19,920	2,176	22,096 (3.3)	180,982 (26.9)	12,363	193,345 (26.7)
2034	84,703	69,431	3,712	445	10,817	169,108 (24.8)	21,000	2,176	23,176 (3.4)	192,284 (28.2)	13,159	205,443 (28.0)
2035	88,738	76,243	3,712	445	10,799	179,937 (26.0)	22,081	2,176	24,256 (3.5)	204,193 (29.5)	13,973	218,166 (29.3)
2036	92,389	83,207	3,722	446	10,633	190,398 (27.5)	22,745	2,182	24,927 (3.6)	215,325 (31.1)	14,845	230,170 (30.8)
2037	94,835	88,702	3,712	445	10,600	198,295 (28.4)	23,565	2,176	25,740 (3.7)	224,035 (32.1)	15,655	239,690 (31.9)
2038	96,560	94,353	3,712	445	10,602	205,673 (29.2)	24,270	2,176	26,446 (3.8)	232,119 (32.9)	16,523	248,641 (32.7)

자료: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

개정안은 2030년까지 총 에너지 발전량의 30%, 2040년까지 60% 이상, 2050년까지 100%를 재생에너지로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중장기 확대 목표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법률에 목표를 직접 명시함으로써 발전 동력을 활성화하여 탄소 중립 실현을 가속화하고 정부의 이행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가 있음.

다만, 개정안의 목표는 정부안 대비 최대 2배 이상 높게 설정되어 있고,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에서 수치적 법정화는 향후 전력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유연한 정책 대응권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비교]

	정부안	개정안
2030	18.8%	30%
2038	29.2%	60%이상 (2040년)

또한, 법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법적 책임 소재의 불분명함으로, 실질적인 보급 확대보다는 선언적 규정에 그치는 실효성 문제가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정책의 경우 기술 발전 속도, 전력 계통 보장 여부, 지역 수용성 등 불확실성의 요소들이 있으므로 법률을 통해 비율적 목표를 설정하여 경직성을 증가시키기보다는 단계적

으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출하였음.

관련 산업계 또한 앞선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공영화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의 법률화가 결합될 경우, 목표 달성 주체가 공공부문으로 고착되고 민간 부문의 장기 투자 유인이 저하되므로, 법률에 확대 목표를 의무로 규정하기보다는 ‘권장’의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다. 기본계획 수립시 공공재생에너지 목표 비율 포함 등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 수립시 재생에너지 총발전량 중 국·공영시설의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를 포함하도록 하고(안 제5조제3호의2), 시·도지사의 지역 기본계획 수립 및 수립시 공영화 목표 지원방안 포함 의무를 신설하며(안 제6조의2),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 수립시 사전협의 대상에 주민, 시민단체 등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략)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u>3의2. 재생에너지 총발전량 중 국·공영시설의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u>
4. ~ 10. (생략)	4. ~ 10.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u><신설></u>	<u>제6조의2(지역 기본계획 및 지역 연</u>

차별 실행계획)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며, 지역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간
2. 재생에너지 자립의 추진방법과 생산·이용·보급의 목표
3. 재생에너지 공영화 목표 및 지원방안
4. 직전 지역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5. 그 밖에 지역 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조례로 인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지역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지역 기본계획과 지역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제7조(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생략) <u><신 설></u>	<u>을 조례로 정하여 이행한다.</u> 제7조(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의 국가기관 등은 아래 각 호에 대하여 미리 해당 지역의 주민, 시민단체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의 대상과 절차는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해당 지역에 발전시설을 설치 · 운영함에 따른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변화에 관한 사항 2. 재생에너지 자립을 위해 필요한 설비와 조건, 환경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 시민단체 등과의 협이가 필요하다고 대통령령과 조례가 정하는 사항
--	---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하고, 2020년 12월 제5차 기본계획(※참고자료 참조)을 발표하였음.⁶⁾

6) 제6차 기본계획은 2025년 9월부터 추진 중임.

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에서 심의·확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목표 및 이행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개요]

주기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
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
심의 주체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내용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목표 및 이행방안 제시
계획의 범위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간 2.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목표 3. 총 전력생산량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 4. 「에너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 5. 기본계획의 추진방법 6.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의 평가와 보급전망 및 기대효과 7.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지원 방안 8.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계획 9.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10.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현행 기본계획은 전체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발전 설비의 소유 주체(국가·지자체 혹은 민간)에 따른 세부 비율을 법정 계획에 포함하고 있지 않고, 현행법에서는 기본계획 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계획 수립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개정안은 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총 발전량 중 국·공영시설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를 포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재생에너지 공영화 목표 및 지원방안을 포함한 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의 공공 주도성을 담보하려는 취지가 있음.

즉, 재생에너지 보급을 시장의 자율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공공시설에서의 생산 비중’을 설정하여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중앙정부의 재생에너지 기본계획과 연계한 지방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정책 연속성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의의가 있음.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 목표를 관리하는 현행 체계에 더하여 재생에너지 발전 주체까지 계획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은 에너지 관리 체계의 경직성을 증가시켜 실제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민간 투자가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공공 비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의 진입을 인위적으로 제한할 경우 행정적 비효율과 보급 지연이 초래될 수 있음.

둘째, 지방자치단체에 공공 발전 비율 준수 의무를 부과할 경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중앙정부의 재정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어 재정 건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참고로, 202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99,884MWh(세종)에서 11,370,487MWh(전북)의 편차를 보이며, 지역별로 최대 약 57배 차이임.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2024년 기준)]

(단위 : MWh, %)

광역지자체	신재생에너지 합계	재생에너지 합계	신에너지 합계	신재생에너지 비중
서울	1,027,442	401,201	626,241	1.51%
부산	777,639	490,391	287,248	1.14%
대구	680,242	643,640	36,603	1.00%
인천	2,268,863	569,333	1,699,530	3.33%
광주	679,248	502,790	176,458	1.00%
대전	253,281	166,499	86,782	0.37%
울산	750,478	485,392	265,085	1.10%
세종	199,884	159,557	40,327	0.29%
경기	6,357,149	4,770,352	1,586,797	9.33%
강원	7,215,283	6,389,619	825,664	10.59%
충북	3,574,387	3,244,426	329,960	5.25%
충남	10,356,301	7,609,677	2,746,625	15.20%
전북	11,370,487	11,249,291	121,195	16.69%

광역시자체	신재생에너지 합계	재생에너지 합계	신에너지 합계	신재생에너지 비중
전남	9,176,871	8,835,284	341,588	13.47%
경북	6,864,780	6,429,257	435,523	10.08%
경남	3,722,944	3,673,865	49,078	5.47%
제주	2,840,502	2,840,075	427	4.17%
전체	68,115,781	58,460,649	9,655,131	100%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천연 자원의 분포 및 설비 역량의 지역별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공영화 발전 비율 목표를 정하여 지역별로 배분 등 달성 의무를 부여할 경우, 지역별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지역별 재생에너지 공영화 목표를 정할 경우, 특정 지역에 투자하려던 민간 자본이 공영화 비중 제한에 걸려 타 지역 혹은 해외로 이탈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활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마지막으로, 계획 수립시 사전협의 대상에 주민, 시민단체를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은 주민과 시민단체의 범위 등 협의 주체가 모호하여 책임 소재에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본계획상 국·공영시설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일률적으로 설정할 경우 경직성 증가로 이어져 공공·민간의 조화로운 역량 발휘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제출하였음.

한편, 해양수산부는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 수립시 공공기관

(연구기관)에 주민,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법적 사전 협의 의무를 부여할 경우, 기술개발 속도 지연, 지나친 행정 절차 이행 등으로 타 국가 기술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라. 자연력 활용 부담금 신설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판매대금의 10% 범위 이내에서 자연력 활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지역 기후대응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역재생에너지 자립에 필요한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12조의2(자연력 활용 부담금) ①</u>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연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u> <u>② 제1항의 부담금은 재생에너지 판매대금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u> <u>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부담금을 지역 기후대응기금에 적립하고,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u> <u>1. 지역재생에너지 자립에 필요한 사업</u> <u>2. 지역재생에너지 복지 관련 사업</u>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사업 지원 ④ 제1항의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하여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른다.
--	---

현행법상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별도의 자원 이용 부담금을 내지 않으며, 대신 공유수면 점용료나 하천수 사용료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이용료 체계는 발전 수익의 체계적인 사회적 환원이나 지역 주민과의 이익 공유를 담보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개정안은 발전 수익의 일부를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여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공유하고 지역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동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재생에너지 사업에 판매대금의 10%에 달하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발전원가의 상승을 초래하여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국민적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둘째,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⁷⁾에 따라 별도 부담금 설치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의 별표 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또한 부담금은 그 목적과 사용 사이 관련성⁸⁾이 있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그 이익을 일반 ‘국민’이 향유하도록 하는 것으로 관련성이 미비한 측면이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적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발전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업 수익성을 저하시켜 투자 위축 및 보급 속도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지역 주민 지원 등은 기존 현행법에 근거한 주민참여 등으로 가능하고, ‘햇빛·바람소득마을’ 정책(※참고자료 2 참조)을 추진하여 지역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발전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기획예산처는 부담금 부과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하고, 공공요금에 대한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 발

7) 「부담금 관리법」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8) 부담금은 특정 집단에만 부과하여 부담금을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특정 경제적·사회적 과제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함(2017헌가21)

전사업자에 대하여만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조항에 대한 삭제 의견을 제출하였음.

관련 업계는 고갈자원에 해당하지 않는 태양광에 자원이용 부담금을 적용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장려 정책과 모순되며, 부담금으로 인한 투자수익성(ROI: Return on investment)을 낮춰 민간 자본의 유입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제출하였음.

마. 정의로운 전환 이행 의무 신설

개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 등의 폐쇄로 노무제공관계가 종료된 노동자를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우선 고용하도록 하고,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취업을 위한 교육 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조문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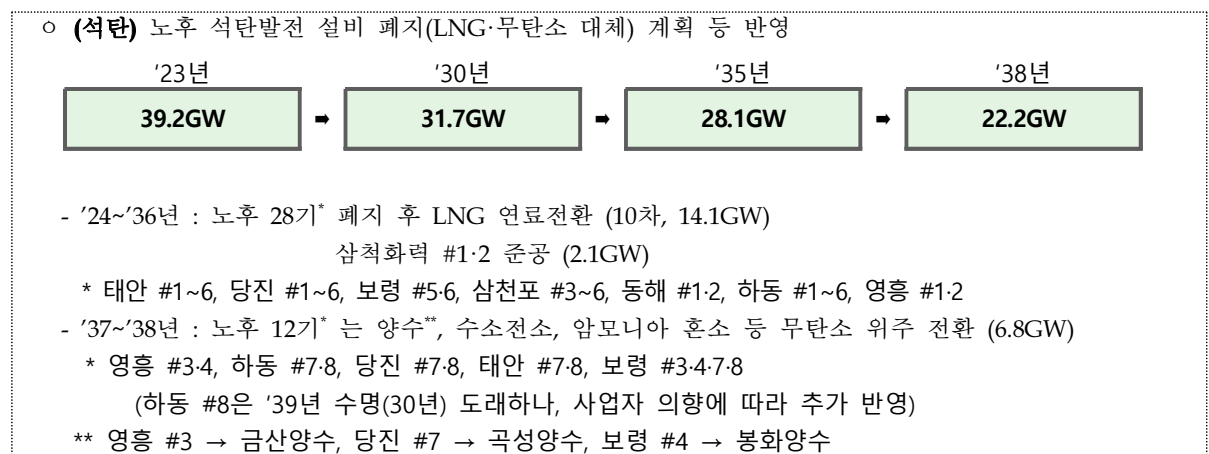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2조의4(정의로운 전환 이행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석탄화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이외의 발전사업의 종료 또는 감축으로 이에 종사하는 노동자(「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 및 외형에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의 노무제공관계가 종료될 경우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우선 고용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② 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관계</u>

	가 전환되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종전의 노무제공관계의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아니된다. ③ 노무제공관계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취업을 위한 교육, 생활보조금 지급, 생활근거지 이전에 따른 비용 보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	--

국가 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목표에 따라 석탄 발전소의 단계적 폐쇄가 예정되어 있어⁹⁾ 해당 산업 종사자들의 실직과 지역 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법”이라 함)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기후위기 사회안전

9)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 2038)



망 마련(제47조),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의 지정(제48조), 사업전환 지원(제49조), 협동조합 활성화(제52조),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의 설립(제53조) 등 지원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의미함(「탄소중립기본법」 제2조제13호).

개정안은 전환 과정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 중심의 발전 구조 개편과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여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고 노동권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가 있음.

다만, 동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특정 산업 종사자에 대한 우선 고용을 법령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인력 운영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채용의 공정성 측면에서 일반 구직자나 청년층과의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음.

둘째, 기존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은

발전 공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제약하고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해당 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공공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마지막으로, 이미 일반법인 「탄소중립법」에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별도 개별법을 통해 고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법 체계상 중복의 가능성이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우선고용, 노동조건 유지와 같은 사항을 법을 통해 강제하는 것보다, 「탄소중립법」 제47조제3항¹⁰⁾을 활용한 생활지원방안 마련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실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입장을 제출하였음.

또한, 화석연료 발전사업 종사 노동자에 대하여는 본 조항을 통한 지원보다 현재 국회에서 입법 추진¹¹⁾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특별법안」¹²⁾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지원 목적에 보다 부합하다는 입장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546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③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사업전환 및 구조적 실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업의 발생 등 고용상태의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재교육, 재취업 및 전직(轉職) 등을 지원하거나 생활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1) 2025.6.2. 태안화력 사망사고를 계기로 기후부-양대노총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임.

1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 등

※ 참고자료 1 :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요약(2020~2034)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주요 특징】

□ 금번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기간·목표를 맞추어 에너지분야 **장기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 이번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동일한 **2020~2034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되, '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 또한 제9차 수급계획에 맞춰 **25.8%**(재생 22.2%, 신 3.6%)로 설정하였다.
 - * 제9차 수급계획에 따른 '34년 신재생에너지(사업용+자가용) 설비용량은 82.2GW (바이오혼소 포함시 84.4GW)
- ② 기존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고려가 부족했던 전력계통, 재생에너지 수요, 신에너지(수소)** 등의 내용을 **대폭 보완**하였다.
 - 제5차 계획기간 중 재생에너지가 주력 에너지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간 보급위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넘어 전통전원 수준의 계통기여 및 시장제도 등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함이다.
- ③ 계획기간(2020~2034년)을 넘어, **2050년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도전과제와 대응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였다.
 - 금번에 제시한 대응방향은 내년 '에너지 탄소중립 전략' 수립 과정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참고> 기존계획 대비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주요 특징

기존 계획(1~4차)		제5차 계획('20~'34)
신재생에너지 양적 확대에 중점, 계통 안정성 등 감안 부족	⇒	계통 수용성 증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
공급·의무화 측면에 중점 (RPS, FIT 등)	⇒	수요·자발적 확산 보완 (RE100, 자가용 촉진 등)
신에너지(수소분야)에 대한 고려 미흡	⇒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 포함

+ (추가) 탄소중립 시대의 도전과제	
① 획기적 잠재량 확충·개발방식 혁신 ② 기술한계 돌파 ③ 전력계통 대전환 ④ 그린수소 확대 및 에너지시스템 통합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핵심 내용】

-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장·수요·산업·인프라 5대 혁신**을 바탕으로 **저탄소 사회·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보급혁신 질서 있고 지속 가능한 확산

-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One-Stop Shop)** 도입, 설비수명 증가에 따른 부지 임대기간 확대(現 20년→예: 30년),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등 **인허가 규제 개선**
 - * 풍력 원스탑샵 설치를 위한 '(가칭)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추진 ('21년)
 - * 신재생에너지법에 이격거리 특례규정 마련 또는 표준조례안 제정 등 검토
-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신재생e 중심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이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강화**, 계획입지 도입(중장기) 등 **지역주도의 신재생 확산**
- 신재생에너지에 적합한 **유휴 국유지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21) 등 **입지 맞춤형**(건물·산단·유휴 국유지 등) 보급 확산
- 맞춤형 용자, 녹색보증, 신재생 생태계 펀드 등 **다양한 금융지원**으로 투자활성화 유도
- 재생에너지 인허가 통합시스템과 연계한 **설비 통합 안전관리 체계** 구축
 - * 인허가 통합시스템(지자체 인허가 현황 등 파악(現 전북·경북→’21년 전국)) 활용, 안전관리 강화

2. 시장혁신 RPS 시장 효율성 제고, 非전력 분야(열·수송) 신재생 확대

- 사업자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경쟁입찰 **장기계약 중심으로 RPS 시장 개편**(태양광 우선 → 풍력 등 他에너지원 확대, 에너지원별 시장분리 등 검토)
 - * 탄소인증제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신규 사업자 분리입찰, 대규모(20MW 이상) 신규시장 신설 등 現 입찰제도 개편도 추진
- 보급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준으로 **RPS 의무비율 상향(’34년 40%)** 및 **공급의무자 확대** 검토
 - * 발전설비 기준 하향시(現 500MW → 300MW) 공급의무자 확대(’21, 23개社→30개社)
- **신재생열 보급제도**(RHI 또는 RHO)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신재생 연료혼합**

의무화(RFS) 대상 다각화(바이오 연료→재생e 전력, 수소 등) 검토·추진

- * 아울러, 바이오디젤 혼합비율(現 3%)을 '30년 5% 내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예치·유예 등 의무이행의 유연성 부여를 위한 제도개선 병행

3. 수요혁신 RE100 본격화 및 자가용 확산

- 기업·공공기관 등의 RE100 이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이행수단을 가동(21~)**하고, 공공기관의 선도적 참여 유도
- 온실가스 감축 인정에 더해 녹색보증 지원, RE100 라벨링 부여 등 **RE100 참여 인센티브 강화**, 향후 **RE100 참여주체**를 산단·지역·국민 등으로 확대
 - * RE100 산단, 마을단위 RE100, 녹색 프리미엄 판매대상에 주택용 전기소비자 포함 등
- **자가용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자가소비형 REC** 등 인센티브 부여 검토·추진
 - * 우리나라의 자가용 태양광 설비비중('19년 9%)은 매우 낮은 수준(독일 74%, 미국 40%) → 지속 가능한 보급, 계통부담 완화 등 위해 자가용 확대 필수
 - *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후, 보급속도를 평가하여 추가 확대
- 시간대별 **수요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는 **수요이전**(주간요금 할인 등), **공급이전**(저장후 他 시간대 활용; **저장믹스 계획 수립**) 등을 통한 **수요 창출**
 - * 출력제어가 증가하는 **제주 대상 저장믹스(Storage Mix) 계획 우선 수립('21년, 잠정)**
 - * 재생에너지 전력의 열·가스 등 **타분야 전환(섹터 커플링)** 기술개발·실증도 추진
(예) 그린수소 생산(P2G) → 수소차 충전 / 열(Heat) 생산(P2H) → 열수요 지역에 난방 공급

4. 산업혁신 수소 전문기업 및 에너지혁신기업 육성 등 혁신역량 강화

- 수소 소부장 **R&D**, 혁신조달 및 투자확대로 **수소전문기업 1,000개,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에너지 혁신기업 100개**(現 9개) 육성
 - * 수소 소부장 R&D 지원규모(억원) : ('22년) 200 → ('25년) 1,000 → ('30년) 2,000
- **고효율 태양전지**(‘30년 35%), **초대형 풍력터빈**(12MW 이상), **그린수소 양산**(‘30년 100MW), **수열**(대용량 히트펌프 등) 등 **핵심기술 국산화**
 - * R&D 결과는 공기업 시범사업 연계 등으로 트랙레코드 확보 지원
- **최저효율제, 탄소인증제 고도화**로 **고효율·친환경제품 시장 확대**
 - * 최저효율 기준의 단계적 상향 및 탑 러너(Top Runner, 최고 에너지효율 제품군) 도입, 現 태양광 모듈에서 풍력·연료전지 등으로 탄소인증제 대상 확대 등 검토

5. 인프라 혁신

계통 수용성 증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

- 계통혼잡 완화를 위해 기존 고정(Firm) 접속방식에서 선로별 접속용량 차등, 최대출력 제한, 先접속·後제어 등 유연한(Non-Firm) 접속방식 도입

* 접속가능 용량 : (現) 모든 배전선로 12MW → (改) A선로 12MW, B선로 14MW 등

- 재생e 변동성 대응을 위해 ①설비 스스로의 예측 제어능력 제고는 물론, ②유연성 자원 및 ③관성자원 확보, ④재생e 관제인프라 통합 등 대응 인프라 강화

① 발전량 사전입찰, VPP(가상발전소) 구성 등, ② ESS, 양수, 가스터빈 등

③ 계통운영자가 일정수준 이상의 관성자원을 확보하도록 계통신뢰도 기준 강화

④ 전국 계통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21년 운영) 및 스마트인버터 의무화

※ 참고자료 2 : 햇빛소득마을·바람소득마을

1 햇빛소득마을

- '26년 500개, '30년 2,500개 이상 확산을 위해 **범부처 지원체계 구축**
 - '햇빛소득마을 추진단(1단 3과 27명)'을 설치하여(2월) 사업 기획·총괄
 - * 행안부·기후부·농식품부 등 + 지방정부 + 한전·에공단·수공·농공 등 유관기관 구성
 - 지방청, 유관기관 중심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을 통해 현장 밀착지원
- 부지발굴, 인허가, 설치·운영, 계통 등 **소주기에 걸쳐 밀착 지원**
 - 추진단 중심으로 **유관기관 역량**을 결집해 **원스탑 종합서비스** 제공
(△부지: 수공·지방청·농공, △금융: 에공단, △계통: 한전, △안전관리: 전안공)
 - **마을공동체 활성화**, 계통 우선접속 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전기사업법」, 「분산에너지특별법」 개정 추진 중
 - 공공 유희부지 적극 발굴, 태양광 시설의 지역 랜드마크화

2 바람소득마을

- 주민 지분 참여한 **바람소득 마을** 모델 구축 및 확대
 - (모델 구축) 지역 주민들이 직접 풍력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내 마을복지** 등 공공사업에도 활용하는 “바람소득 마을” 모델 구축·확산
 - 기존에는 주민 투자시 REC 부여하여 **개인별** 수익 배분 → 바람소득 마을은 **지역협동조합의 지분투자** 및 수익을 공공사업에 활용
 - (공공입찰 참여) 바람소득 마을 사업은 공공입찰 참여를 허용하되, 지역협동조합의 지분을 **공공지분**으로 인정하고 **우대가격 지원**
 - (정책금융 등) 바람소득 마을 추진시 ▲**정책금융의 지원** **한도 확대**
(현 최대 80 → 85%), ▲**정부 보증** 등 지원